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8. 29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보건소장 최윤정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역보건법」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[별표]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대상 삭제(안 제2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(안 제3조)
- 조문 제목 변경(안 제4조)
-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과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역보건법」 이 일부 개정(시행. 2023.3.28.)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현 조례 제2조(과태료의 부과대상)를 삭제함.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, 입법 경제상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불필요한 개정을 줄이고자 현 조례 제2조(과태료의 부과대상)를 삭제함.
 - 안 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는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조항을 “제34조제1항”에서 “제34조”로 변경함.
 - 안 별표(과태료 부과기준)에서는 안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“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”를 위반사항에 추가하고 그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3,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함. 그 외 현 조례상 이미 규정되어 있는 위반사항 2개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함.
- 검토 결과
 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의료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정보 관리를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8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과태료 부과대상 삭제(안 제2조)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(안 제3조)
- 다. 조문 제목 변경(안 제4조)
- 라.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보건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외
- 라. 입법예고(2023. 7. 6. ~ 7. 26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 중 “법 제34조제1항에 따라”를 “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준용)”을 “(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)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사항	근거법령	위반횟수별 부과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 위반
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	1,000	2,000	3,000
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1호	100	200	300
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제2호	100	200	300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과태료의 부과대상) 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사람</u></p> <p><u>2.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</u>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제34조에 따른 ----- -----.</p>
<p>제4조(<u>준용</u>) (생략)</p>	<p>제4조(<u>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</u>) (현행과 같음)</p>